

수원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21나7843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21나78435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 6. 16 선고 2019가단5677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피고, 항소인 D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부영

변론종결 2022. 4. 27.

판결선고 2022. 5. 25.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 6. 16. 선고 2019가단5677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E 사이에 2018. 9.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8. 9. 10. 접수 제3846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사정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가 강조하거나 지적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쪽 3행부터 5행까지의 ‘그러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중략)..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50조 제2항 제1호는,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이하 ‘회생채무자’라고 한다)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채무자인 회생채무자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회생채무자의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자 등이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회생채권 등의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연대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 등 회생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채무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다25054 판결 참조).

그리고 주채무자인 회생회사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실시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자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금액을 산정함으로써 회생회사의 보증인의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출자전환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회생회사의 기업가치나 그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가치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보증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고(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5830 판결 참조), 이 때 비상장주식의 경우 그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그러한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되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도791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회생법원이 2019. 4. 10. 2018회합100175호로 인가한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에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원금 및 회생개시 전 이자의 35%는 2023년부터 2028년까지 분할하여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 및 회생개시 전 이자의 65%는 출자전환(1주당 액면금액 5,000원, 발행가액 5,000원)을 하되, 위 회생계획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대여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실제로 원고가 위 회생계획에 따라 소외 회사의 신주를 얼마나 배정받아 취득하였는지 여부, 그 신주의 주당 가치와 그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소멸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가 없거나 부족한바,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65%가 위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65%가 그와 같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위 대출금채무의 35%는 여전히 소외 회사가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대출금채무의 35%가 변제 등으로 전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제1심 판결 4쪽 19행의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등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5(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피고와 E의 관계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질 무렵의 여러 사정들, 즉 ① 피고 스스로 E와는 친한 친구 사이로 오랜 기간 동안 E에게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거래를 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바, 이로 미루어 보면 피고와 E는 서로 개인적으로 금전이나 사업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밝히고 있는 E와의 돈 거래 내역이나 경위에 의하더라도 2018. 3. 20. 이후로는 E로부터 대여금의 원금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8. 7. 30. 이미 대여금의 원금이 100,000,000원을 초과하였는데(을 제2호증), 당시 피고는 E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담보설정이나 다른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③ 피고는 2018. 9. 10. E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이전인 2017. 11.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G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46,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E 소유의 이천시 H 답 109㎡에 관하여 2017. 10. 17. 주식회사 P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9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E 소유의 이천시 I 전 556㎡에 관하여도 위 2017. 10. 17.자 주식회사 P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그보다 선순위인 중소기업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여러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바, 시가와 선순위 담보 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E 소유의 위 부동산들 중 이 사건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가장 책임재산으로서

가치가 높아 보이는 점, ④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직전인 2018. 9. 5.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하였고, 그 직후인 2018. 9. 10.부터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연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18. 10. 2. 주식회사 G의 청구금액 200,865,314원의 가압류등기가, 2018. 10. 24. J 주식회사의 청구금액 154,077,017원의 가압류등기가, 2018. 11. 12. 원고의 청구금액 193,314,177원의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진 점, 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담보물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권을 가지는 것으로, 가압류와 같이 피고가 채권자로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채권보전 조치가 아니고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E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7호증(E의 진술서)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엄기창, 판사 김문성, 판사 정승화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이천시 , 동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9층 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7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4.460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이천시 대 17851.7㎡
2. 경기도 이천시 도로 692.3㎡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17851.7 분의 52.7160
2. 소유권대지권 692.3 분의 2.0615. 끝.

